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5월 30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6월 10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올림픽체육과장)

가. 제안이유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따른 유산사업의 일환인 평창 올림픽플라자에 대한 관리 ·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 관람료의 평창사랑상품권 환급 규정(안 제7조)
- 레거시홀 사용료 규정(안 제11조)
- 관리 · 운영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 ·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 · 운영 조례안」 1부.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안」

첨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5. 5. 30.
- 회부일자 : 2025. 6. 9.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따른 유산사업의 일환인 평창 올림픽플라자에 대한 관리 ·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 관람료의 평창사랑상품권 환급 규정(안 제7조)
- 레거시홀 사용료 규정(안 제11조)
- 관리 · 운영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4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17조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6조에서 사용료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나. 입법의 취지

- 평창올림픽플라자의 관리·운영 및 관람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ICT시설 및 부대시설, 야외 기념공원, 기념광장, 미디어 파사드 부대시설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함.
- 안 제7조(관람료 등)에서 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관람료와 감면 기준을 별표1에 정하고, 감면방법과 관람료 반환사유에 대해 규정함.

- 안 제11조(사용료 등)에서 레거시홀 사용료 및 반환기준을 별표 2에 정하고, 사용료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에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5. 종합검토의견

- 평창올림픽플라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불임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 체육관 · 박물관 · 공연장 · 미술관 · 음악당 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 ·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44
----------	-----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 출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따른 유산사업의 일환인 평창올림픽 플라자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의 효율성 도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3조)

- 평창ICT센터 및 부대시설
- 야외 기념공원, 기념광장, 미디어파사드 부대시설 등

나. 관람료 등(안 제7조)

- 평창ICT센터 디지털전시관 관람료
 - 대인 15,000원 / 소인 10,000원 / 감경대상 8,000원
 -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상품권 환급 (5,000원) ※ 관람료를 면제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

다. 사용료 등(안 제11조)

- 레거시홀 사용료 : 1일 기준(09:00~18:00) 300,000원

라.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14조)

-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 운영 근거 마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대상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1회추경 예산에 650백만원(민간위탁금) 반영됨

다. 합의 : 관광경제국 경제과 평창사랑상품권 활용 협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5. 8. ~ 2025.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755호, 올림픽체육과-4275(2025. 5. 8.)호
- 2) 규제심사 :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2025. 5. 19.), 원안의결
[기획예산과-7616(2025. 5. 20.)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예산과-7067(2025. 5. 8.)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17748(2025. 5. 9.)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7625(2025. 5. 20.)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수정의결 [기획예산과-7931(2025. 5. 26.)호]
 - [별표 1] ICT센터 디지털전시관 관람료 감경대상에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 추가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 ·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올림픽플라자의 관리 · 운영 및 관람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창올림픽플라자(이하 “올림픽플라자”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올림픽플라자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1. 평창ICT센터(이하 “ICT센터”라 한다) 및 부대시설
2. 야외 기념공원, 기념광장, 미디어파사드 부대시설
3. 그 밖에 올림픽플라자의 업무 및 기능을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부대시설물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자”란 관람을 목적으로 제3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람료”란 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올림픽플라자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ICT센터 레거시홀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휴관일은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보수 및 점검 등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① ICT센터 디지털전시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등) ① 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관람료와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는 중복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현장 사정에 따라 관람이 취소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시설의 이용 활성화 대책)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관광객 유치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올림픽 플라자 출입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아동
2. 음주 등 그 밖의 원인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위험 또는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험 물품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예정 7일 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ICT센터 레거시홀, 야외 기념공원, 기념광장
2. 그 밖에 군수가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11조(사용료 등) ① ICT센터 레거시홀의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평창군과 사전협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2. 평창군이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할 경우

3. 해당 시설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시설의 변경·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훼손 하였을 때

5.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올림픽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림픽플라자의 이용 실태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올림픽플라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 ·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올림픽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규정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

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편의시설 등) 군수는 올림픽플라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람객의 편의와 수익창출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7조(변상조치) 군수는 올림픽플라자 관람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올림픽플라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올림픽플라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평화 테마파크 운영”을 “평창올림픽플라자 운영”으로 한다.

[별표 1]

ICT 센터 디지털전시관 관람료 (제7조 제1항 관련)

□ 관람료

일 반		감경대상
대인	15,000원	
소인	10,000원	8,000원

- “대인” 이란 19세 이상인 사람
- “소인” 이란 19세 미만인 사람
- “감경대상” 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구성원
 -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람일 기준으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평창군 교류도시 주민
 - 당해 연도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람료 면제 대상을 제외한 사람에게 관람료 부를 평창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 면제대상
 - 국빈, 외교사절, IOC 관계자 및 그 수행자
 - 평창군과 사전 협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 7세 미만의 아동
 -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

[별표 2]

ICT센터 레거시홀 사용료 (제11조 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레거시홀	1일 (09:00~18:00)	300,000	분할이용시 시간당 50,000원

사용료 반환기준 (제11조 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반환 기준		비 고
레거시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선납금액 전액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총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및 당일 취소	총금액의 50% 공제 후 반환	
	시설측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					
사용일시(기간)					
사 용 목 적					
비 고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평창군은 본 시설 사용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신청인 성명(단체명),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평창올림픽플라자 시설 사용허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시설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붙임 1. 전시 또는 행사 계획서
2. 기타 활용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기 타				
취소 또는 변경사유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평창군은 본 시설 사용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신청인 성명(단체명),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평창올림픽플라자 시설 사용허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시설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③~⑩ 생략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① 법 제27조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④ 생략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대상사무)

-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② 생략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평창올림픽플라자 관리 · 운영 등 비용 필요
- 관련조문 : 조례안 제13조(시설의 관리)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평창올림픽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등은 행정재산 관리 위탁금으로 지출 (연평균 인상을 3% 적용)
- 평창올림픽플라자 운영에 따른 관람료 수입과 레거시홀 사용료 징수로 수입금 발생

나. 추계 결과

○ 세입(연 기준)

구분	내용	산출기초	금 액
합 계			807,200천원
관람료	디지털전시관 관람료	연 100,000명 x 8천원	800,000천원
사용료	레거시홀 사용료	연 24회 x 300천원	7,200천원

○ 세출(연 기준)

구분	내용	산출기초	금 액
합 계			1,303,000천 원
비정규직 인건비	정규직 제외 인건비	매표 및 안내 36,000천원 x 4명 안전 및 환경관리 36,000천원 x 9명	468,000천원
경비	사회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72,000천원 복리후생비 2,000천원 수선유지비 75,000천원 전력비 72,000천원 상품권발행비 500,000천원 기타경비 42,000천원	763,000천원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경비 등) x 5%	72,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관람료, 사용료 및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연락처	(033) 330 - 2018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403,600	807,200	807,200	807,200	807,200	3,632,400	
운영수입 (관람, 사용료)	403,600	807,200	807,200	807,200	807,200	3,632,400	
세 출	651,500	1,342,090	1,382,352	1,423,822	1,466,536	6,266,300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651,500	1,342,090	1,382,352	1,423,822	1,466,536	6,266,300	
재원 조달	651,500	1,342,090	1,382,352	1,423,822	1,466,536	6,266,300	
의 존 재 원	소 계	247,900	534,890	575,152	616,622	659,336	2,633,900
	보조금						
지방교부세	247,900	534,890	575,152	616,622	659,336	2,633,900	
자 체 수 입	소 계	403,600	807,200	807,200	807,200	807,200	3,632,400
	지방세						
세외수입	403,600	807,200	807,200	807,200	807,200	3,632,400	
	지방교부세						